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3. 5. 16 선고 2020가단824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송경

담당변호사 정병욱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문준홍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3. 4. 18.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0,933,63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2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와 D는 망 E(1988. 3. 29. 사망)의 자녀이고, 피고는 D의 자녀이다.

나. 원고 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망 E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별지 목록 제1 내지 4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88. 5. 16. 접수 제10667호로 1988. 5.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별지 목록 제5, 6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1988. 6. 1. 접수 제11252호로 1988. 5. 2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이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마쳐진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

다. 관련 소송의 경과

1) D는 원고를 상대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는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 중 D의 상속지분인 5/29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단72380)를 제기하였다.

2) 위 소송 항소심(광주지방법원 2018나62569)인 광주지방법원은 2019. 8. 28. D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원고의 취득시효 완성 항변에 관하여 점유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D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으나(대법원 2019다266690) 2019. 12. 27.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이후 원고는 ‘1983. 7. 17. 망 E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았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D를 상대로 이 사건 지분의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20가단70035, 이하 ‘관련 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다. 관련소송 1심은 2021. 6. 16.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D가 항소하였으나(광주지방법원 2021나60570) D의 2회 불출석으로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어 위 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의 이 사건 지분의 취득 등

1) D는 2019. 8. 28.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0.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을 증여하고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다.

2) 피고와 D는 2021. 6. 29.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피고는 2021. 6. 30. 이 사건 지분에 관한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그리고 D는 2021. 7. 8. F에게 이 사건 지분을 매도하고 2021. 7. 9. 이 사건 지분에 관하여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D에게 이 사건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음을 알면서도 D와 통모하여 2020. 1. 29.경 D로부터 이 사건 지분을 증여받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리고 D는 2021. 6. 16. 관련 소송에서 패소하자 피고와의 증여계약을 해제한 후 2021. 7. 9. F에게 이 사건 지분을 이전해 주었는바, 이러한 D의 행위는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배임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와 같은 D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개별공시지가 상당인 20,933,63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D와 통모하여 D가 이 사건 지분을 F에게

매도하는 데 적극 가담하였다거나 이를 방조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선종

별지

목 록

1. 순천시 G 답 1,216㎡
2. 순천시 H 답 1,513㎡
3. 순천시 I 답 565㎡
4. 순천시 J 답 787㎡
5. 순천시 K 전 347㎡
6. 순천시 L 답 2,109㎡. 끝

